

2007. 11. 23(금) 10:00

 제141회 임시회(제2차 본회의)

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
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

심 사 보 고 서

거 창 군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 2
2.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

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
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6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경제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6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11월 15일
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41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과장 이 동 순)

가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을 적용해 온 농공단지 업무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,
-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시키며,

- 특히,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”로 변경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(안 부칙)
 -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「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- 이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업무가 2002. 12. 30.부터 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”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법규를 바꾸고 조례내용을 근거법규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, 또한 2007. 7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여 조례안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(1) 먼저, 조례제명을 “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”로 바꾸는 것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」 제2조(정의) 제5호에서 산업단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2) 안 제1조(목적)는 조례제정의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것이고,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현행조례 내용을 일부수정보완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3) 안 제4조(세출)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“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단지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으므로, 제4조 제1호를 “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”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4) 또한, 현행 조례 제8조(융자 및 보조)가 삭제된 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“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”(2004. 10. 산업자원부, 농림부, 환경부, 건설교통부)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조례안 제4조제1호 수정

⇒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사항이 없으므로 제4조제1호에 이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p>제4조(세출)</p> <p>①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 경비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4조(세출)</p> <p>①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 대경비</p> <p>②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6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6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11월 15일
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42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제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율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맞추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칭을 띄어쓰기함(안 제명) : 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
-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함(안 제34조)
- 100분의 5 ⇒ 100분의 3

- 부적합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
(안 제1조·제14조제3항·제19조·제25조제3항·제30조 본문·제34조·42조제1항)
 - 의하여 ⇒ 따라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 - 날로부터 ⇒ 날부터
 - 기타 ⇒ 그 밖에 (안 제1조·제6조제5항제3호·제19조제9호·제30조제3호·제39조제4항제2호·제42조제1항제12호·제45조·제47조제2항)
- 법령명에 낫표(「」)사용 (안 제1조·제39조제1항·제46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- 이 개정조례안은 2005. 12. 31.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을 인하에 따른 상수도요금체납액의 가산금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, 조례내용 중 부적합한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론 요지 : 생 략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